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0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부과 대상 범위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안 제10조)
-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23조의1 및 제23조의2)
- 연체금 등 일할 계산방식 도입(안 제23조의2)
-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20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부과 대상 범위를 공고된 배수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

안 제20조의1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

안 제23조의1에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신설

안 제24조에서는 가산금 일할 계산방식 도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함과 함께 사용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과오납 환급절차의 필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로 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범위는 평창군 관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 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3년
2. (채무)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5년

제24조제1항 중 “가산금을”을 “가산금(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 ~ ③ (생략)</p> <p><신설></p>	<p>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1(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p> <p>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범위는 평창군 관내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p>

<신 설>

제23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

<신 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략)

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3년
2. (채무)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5년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가산금(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총당) 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 오 납 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환 불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총당후잔액 (환 불 액)			
총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총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총 당 금 액			총당후의 미 납 액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의1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